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9일, 김소회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2025.1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20.)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
정가결)

제8차 전체회의(2025.11.24.)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소희의원)

현행법에서는 지정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환경청장과 일반폐기물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일반폐기물을 혼합하여 처분하는 시설의 동일한 한 가지 법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

이로 인해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두 개의 행정주체가 중복된 행정처분을 함에 따라 업체에 과도한 행정처분이 부과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잉 제재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향진)

개정안은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다른 처분권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다른 처분권자는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위반행위의 차수에는 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2항·제3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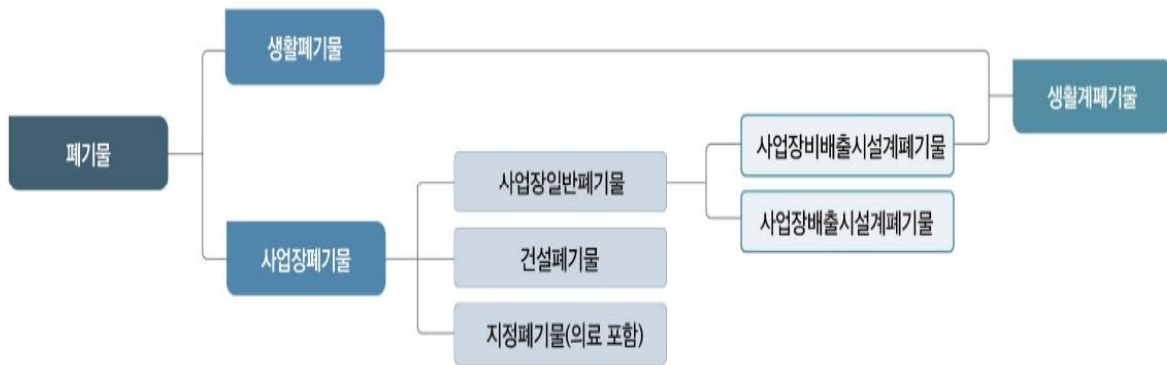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생략)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 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 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 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 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 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 위 차수에 포함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하면서,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폐유·폐산 또는 의료폐기물 등의 폐기물을 지정폐기물¹⁾로 분류하여 한층 강화하여 관리하도록²⁾ 규정하고 있음.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정의) 4.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醫療廢棄物) 등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2) 지정폐기물 배출 사업자는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하며(법 제17조제5항),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그 외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법 제25조제3항).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구분]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이에 따라 현행법은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으로 하려는 자 중 ①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②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원적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며³⁾,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

-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 재활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로 하려는 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제외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후 그 적합 여부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지 여부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
 3.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와 기술능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 지 여부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이 악화되거나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는 등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제5항제1호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6개월, 폐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 영업대상 폐기물 및 처리분야별로 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그 밖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서 처리하려는 자(이하 “혼합처리업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모두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나,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적합통보 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⁴⁾.

또한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업자가 현행법을 위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⁵⁾, 이에 따라 혼합처리업자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모두 행정처분을 할 수 있게 됨⁶⁾.

개정안은 위와 같이 처분권자가 둘인 경우,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한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다른 처분권자는 행정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비례원칙을 벗어난 과잉 제재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4)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 ⑭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려는 자가 지정폐기물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관련하여 각각 그에 해당하는 시·도지사의 적합 통보·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변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3. 제1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한 경우

5) 「폐기물관리법」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1의2. 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적합성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각 호 생략)

6) 2019년 6월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경인환경에너지(주)의 소각로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과징금 2천만원, 인천 서구청에서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사업장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 비교]

구 분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종류	지정을 제외한 폐기물	폐유·폐산 등
허가기관	시·도지사 (조례로 시·군·구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지방환경청장에 위임)
동일한 시설에서 취급시	- (허가절차 일원화) 환경청에서 허가 의제처리	
	- (지도·점검) 합동점검 또는 환경청·지자체 소관별 점검	
개정안 주요내용	- 지도·점검에서 환경청-지자체가 같은 위반사실 적발시 각각 처분 ⇒ 중복제재 제기가 있어 이를 단일화	

이에 더해, 개정안은 중복행정처분 금지 대상에서 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하고 있는데, 혼합처리업자의 위반행위 종류 및 횟수에 따라 허가취소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처분권자가 허가취소를 하였다고 하여 다른 처분권자가 허가취소를 하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⁷⁾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보여짐⁸⁾.

또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 간 행정처분 순위를 두지 않고, 먼저 행정처분을 한 처분주체가 그 사실을 다른 처분주체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특정 처분주체가 처분을 먼저 하였다는 우연한 사정만으로⁹⁾ 행정처분의 경중이 달라질 수

7) 일례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을 먼저 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폐기물에 대해 허가취소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8) 법무부도 허가취소는 법문상 의제효과를 받지 않으므로 지방환경청장의 허가취소가 있다고 하여 시·도지사의 허가취소로 의제할 수 없으며, 각각의 허가권자가 사후관리를 해야 하므로 중복처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9) 가령, 지정폐기물 처분권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입장의 위반행위 누적횟수가 2회, 그 외의 폐기물 처분권자(시·도지사) 입장에서의 위반행위 누적횟수가 1회인 경우, 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먼저 행정처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더 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

있으므로 위반행위의 횟수를 동일하게 추가하는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해 보이나,

개정안의 내용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두 처분권자 간 신속한 통보와 정보 공유가 필수적이므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그 세부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사한 두 제도의 중복 적용으로 인한 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며,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및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두 행정주체가 중복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처벌의 과잉성이 큰 바, 중복 행정처분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참고로,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개정안으로 2건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8251호¹⁰⁾ /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9568호¹¹⁾) 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10)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시·도지사가 동일한 위반사항에 대해 과징금을 중복하여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며,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함.

11) 혼합처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해 중복하여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함.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김형동)

수정가결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자구심사를 거쳤음.

9. 심사보고서 불임서류

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11.

제안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수정이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되었으므로 이를 반영하는 등 용어를 정비하고, 하위법령 정비에 소요되는 시일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조정하는 한편,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명확히 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 가.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조정하는 등 용어를 정비함(안 제60조제3항).
- 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하도록 하고,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경과조치를 추가함(안 부칙 제1조 및 제2조).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0조제3항 중 “환경부령으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로,
“위반행위 차수에 포함해야”를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로 한다.

안 부칙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생략)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 ② (개정안과 같음)
<u><신설></u>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u><신설></u>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③ ----- -----

	<u>통보받은 처분권자</u> <u>는 환경부령으로</u> <u>정하는 바에 따라</u> <u>그 사실을 위반행</u> <u>위 차수에 포함해</u> <u>야 한다.</u> <u>부칙</u> <u>이 법은 공포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 <u>-기후에너지환경부</u> <u>령으로-----</u> <u>-----위반행위</u> <u>의 횟수에 포함하</u> <u>여야-----.</u> <u>부칙</u>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개</u> <u>월이 경과한 날</u> <u>부터 시행한다.</u> <u>제2조(행정처분의 기</u> <u>준에 대한 경과</u> <u>조치) 이 법 시</u> <u>행 전의 위반행</u> <u>위에 대한 행정</u> <u>처분에 관하여는</u> <u>제60조의 개정규</u> <u>정에도 불구하고</u> <u>종전의 규정에</u> <u>따른다.</u>
--	--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6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생략) <u><신 설></u>	제60조(행정처분의 기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하나의 처분권자가 행정처분을 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른 처분권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허가취소 처분은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u> ③ <u>제2항에 따라 행정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처분권자는 기 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포함하여야 한다.</u>
<u><신 설></u>	